

## 교회정치의 개혁

허 순 길 교수  
(신학박사·대학원장)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다면 누구나 매일 새로워지고 범사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봄으로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엡 4:13-16)

자람이 없을 때는 침체되고 변형(deformation)이 된다. 교회의 사람은 곧 교회의 개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람은 단순한 물리적 숫자의 사람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의 교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밝혀내어 그 진리의 풍요를 계속 즐길 뿐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교회생활을 개혁하여 가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교회는 한국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전통(傳統)과 정통(正統)을 지켜오는 교회로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개혁해 가는

교회생활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야 한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또한 개혁할 요소들을 찾아내어 토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유익된 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교회정치 분야에만 한정하여 교회개혁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 종교개혁과 교회정치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교리와 정치면에서의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자들은 중세의 교권정치(教權政治)가 성경과 역사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인간 교권욕의 산물인 것을 밝혀내고, 성경적인 교회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성경적, 역사적 견지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정치제도의 허구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sup>1)</sup>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한 교황권과 감독정치에 대한 도전이었고, 성경적인 그리스도 왕정(王政)에 기초한 교회정치의 회복 운동이었다. 칼빈 이후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이란 원리를 교회정치에도 엄밀히 적용하여 모든 직분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찾았다.

대륙의 개혁교회가 철두철미 이 원리 위에서 교회정치를 확립하였고<sup>2)</sup> 장로교회도 철두철미 같은 원리를 따라서 교회정치를 수립하였다. 장로교 정치가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먼저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회의(The Westminster Assembly)를 소집할 때 발표한 포고령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 포고문은 대감독, 감독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1) Calvin'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Vol. IV. 1-13.

2) The Church Order of Dordt, 1618-1619. of Mr. George Gillespie(Edinburg 1846).

교권 정치체제가 나라에 장애가 되고, 교회의 개혁과 성장에 해가 됨으로 이 교권체제를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와 대륙의 다른 개혁 교회들과 일치한 교회 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신학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3)</sup>

그리고 성경을 따라 교회정치를 개혁하려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신학자들의 의지는 그들의 진지한 노력과<sup>4)</sup> 이로 말미암아 작성된 장로 교회정치 (The Form of Presbyterial Government) 원문에 나타난 세밀한 성경본문 각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sup>5)</sup>

이런 전통에 기반을 둔 장로교회는 언제나 신권 (Jus Divinum)에 기반을 둔 교회정치 개혁에 힘써 왔다.)

1970년대 이후, 역사적 전통을 고수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혁 교회들과 장로교회들은 지난 수백년 동안 사용해 온 교회정치를 대폭 수정 혹은 재정비함으로 개혁의 의지를 보였었다.<sup>6)</sup> 이 대폭 수정 혹은 재정비된 교회정치를 대하는 분은 누구나 새로 밝혀진 성경의 빛 아래서, 개혁주의 원리를 따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혁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교회정치를 수정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개혁주의 장로교회정치의 원리를 따라 개혁하는 노선을 취해 왔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왜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라

부르는가를 자문하면서, 장로교회 정치원리를 따라, 교회정치를 수정하고 교회생활을 개혁해 가야 한다.

## 개혁을 요하는 요소들

### 1) 민주정치가 아닌 그리스도 왕정(王政)

한국 장로교 정치에서, 교회정치가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교회의 정치가 그리스도 왕정이란 개혁주의 이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교회정치가 민주정치라는 것은 회중교회(會衆教會 : Congregationalism) 정치 이념이고, 장로교의 것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구성한 신학자들 중에는 이 회중교회 정치(혹은 독립교회 정치라고도 부름, Independentism) 이념을 가진 분들이 있어 장로교 정치 초안 작업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sup>7)</sup>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장로교 정치원리를 견지하는 분들이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장로교회 정치가 민주주의적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특별히 상회(上會)인 대회(Particular Synod)나 총회(General Synod 혹은 General Assembly)가 하회(下會)가 파송하는 대표자(혹은 총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원리 제 7 조의 “치리권은, 전 교회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서 행사함을 불문하고”란 표현이 같은 오해를 낳게 한다고 생각된다.<sup>8)</sup>

3) Notes...of the Assembly of Divines, Works

4) J. R. De Witt, Jus Divinum,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Divine Right of Church Government, Kampen, 1969. 이것은 장로교회 정치 초안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한 논문임.

5)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A Collection of Reformed and Puritan documents on Church Issues by Iain Murray, The Banner of Truth Trust, London 1965, pp. 201—230

6) 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1978, The Canadian Reformed Churches 1984, The Free Reformed Churches 1983,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1981 각각 교회정치 재정비함.

7) Thomas Goodwin, Philip Nye, Sidrach Simpson Jeremiah Burroughs, William Bridge 등이 회중교회 정치를 강하게 대변했다. De Witt, op cit., p. 27.

8) 구라파의 왕정세계를 떠나, 새 땅에서 민주사회를 이루한 미국적 환경 속에 사는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정치를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차원에서 Charles Nodge or James H. Thornwell의 논쟁 가운데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적 개념은 영국, Scotland 장로교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정치원리”도 미국장로교회 정치 서두에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상회의 조직이 하회에서 파송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결코 장로교회 정치가 민주적 정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회에 가는 총대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가 속한 하회(노회)의 대변자로 명령(mandate)을 받고 가지 않는다. 물론 그는 그가 속한 하회의 뜻을 참고는 할지라도 거기에 메이지는 않는다. 총대가 만일 상회에 가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회로부터 받고 간다면, 상회라는 것은 하나의 표결의 대결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대는 언제나,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문제에 대한 뜻을 밝히며, 그리스도에게만이 그 양심이 결박을 당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장로 교회의 상회를 민주적 대의정치(代議政治) 기관에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장로교회 정치가 민주정치라는 다른 오해는, 한국 장로교회 정치 표준서에서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자”로 정의하고 있는 데서 비교되고 있다고 보겠다.<sup>9)</sup>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라고 생각할 때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민주적 대의기관(代議機關)이 된다.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라는 표현은 매우 불행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 표준서 원문에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기원에 직접 관계가 있는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불행스러운 표현이 오랫동안,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라는 그릇된 이름을 교인들의 의식 속에 심어왔고, 장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아 그의 왕권(王權)을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성경적인 직분관을 흐리게 만들었다.<sup>10)</sup>

그리고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은 장로직과 목사직 사이에 양극현상(polarization)을 초래해 함으로 직분자 세계의

통일과 조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장로와 목사는 그리스도 한 분의 왕직과 선지자직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종들고 있다는 입장에서 서로 아름다운 협력과 조화를 나타내야 한다.)

## 2) 목사에 대한 불필요한 다양한 칭호

개혁주의 정치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회 직분간의 동등권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들은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인데, 이 직분들은 사명과 직책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sup>11)</sup> 특별히 목사 상호간의 동등권이 무너질 때, 실질적으로 대감독, 감독, 신부체제와 같은 교권정치 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상 개혁자들은 이 교권체제를 대항해서 싸움으로 성경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외국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정치 표준서에 나타난 목사의 직임상의 명칭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것이 계급이 아니고 직임상의 구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권적 계급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상 계급이란 형식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분담된 사역에서나 목사로서의 직임수행에 제한을 받게 될 때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위임목사, 임시목사의 구별을 지어왔으나, 이제 이것이 건전한 교회발전에 유익하며, 목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개혁교회 정치와 장로교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Pastor, Minister 혹은 minister of the Word” 외에 어떤 다른 직임상의 칭호도 발견할 수 없다. 선교사, 종군 목사 등은 목사로서 특수한 영역의 사역자로 봉사한다는 것뿐이고, 구별된 목사의 칭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무임목사가 어떻게 직임상의 칭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무임이면 실상 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를 직임상의 명칭으로 둔 것은 모순이다.

9) 교회정치 제 14 조 : “(2) 치리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며,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 24 조 : “치리 장로는 교인들에게 선정함을 받고 대표자가 되었으니”

10) 고린도전서 12 : 28, 에베소서 4 : 11 참조.

11) The Church Order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the U.S. Art. 2

나아가 은퇴목사를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 원리인 목사의 동권에 배치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복음 증거에 평생을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같은 이름이 주어져야 한다. “은퇴목사” 이상 더 영광스런 이름이 있을 수 없다. 형식상의 칭호 때문에 동직자들 사이에 차별의식 혹은 정신적 격리감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 지교회를 20년 이상 봉사한 분에게 원로목사의 칭호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이 칭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개혁주의 성격에 배치된다. 이것은 목사직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도 생각된다. 한 교단 안에 교회들을 평생 봉사해 왔다면, 한 교회를 오래 시무했던 혹은 여러 교회들을 옮겨가며 시무했던 이것이 은퇴시에 받는 칭호에 관계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의 위협이 있다.

그리고 은퇴목사에게 노회가 수여하는 공로목사라는 칭호도 개혁주의 생활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만 (*Soli Deo Gloria*)을 선양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이름을 추구하거나 사람을 높이 지 않는 개혁주의 생활원리에 배치된다. 이런 명예를 나타내는 칭호의 수여는 한국 이외에 어느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은퇴목사 (*Emeritus minister*)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런 이름이다. 이는 평생 복음 사역자로서의 공식적인 봉사를 마무리짓고 은퇴한 목사가 받는 영광스런 이름이기 때문이다. 봉사를 마친 목사의 칭호에 있어서 “은퇴목사”라는 칭호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 보겠다.) 이 이상이나 이하의 칭호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제 37 회 장로교회 총회는 은퇴장로 예우 문제에 대한 연구위원을 선정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띤 제안으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은퇴목사에게 준 불필요한 명예직 칭호를 생각할 때, 은퇴하는 장로에게도 “원로장로” “공로장로” 등의 명예직 명칭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개혁의 길이 아니고 더욱 변질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 3) 교권적 요소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교권을 무서워하고 경계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교권이 행사되기 쉬운 정치체제를 피했었다. 교회의 상설 치리회는 당회와 노회에 한정되었고, 총회(대회도 포함)는 임시 치리회로 간주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상설 치리회는 임원이 계속 집무를 하되, 임시 치리회에서는 회의가 열리는 동안만 임원이 존재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노회도 상설 치리회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가장 오랫동안의 토론을 하게 된 것으로 성경적 해답을 얻는 일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sup>12)</sup>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지역교회의 완전성과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회중교회 정치를 옹호하는 자들의 반대와, 교권체제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염려 때문이었다.

장로교의 전통은, 총회는 노회 총대들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치리회로서,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정회가 아니고 파회(罷會)를 하게 되었다. 이 치리회에서 미진된 모든 업무는 특별히 지명된 위원회(Committee)에 맡기게 되었고, 총회로서의 치리회는 파회로서 끝났으니 임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가 얼마나 교권을 무서워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근년에 장로교회들 가운데는 이 장로교회의 기본정신을 떠나 총회를 상설 치리회로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 이중 하나가 미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이다.<sup>13)</sup> 그러나 전세계 장로교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The Free Church of Scotland*)는 그 정치 표준서에서 총회는 상설 치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하회의 치리회와 분명히 다른 것을 밝히고 있다.<sup>14)</sup> 우리 교회 정치 표준서에도 총회가

12) J. R. De Witt, op. cit., pp. 105—138.

13)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14 : 2

14) *The Practice of the Free Church of Scotland in Several courts*, Chapter IV.

임시 치리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폐회시에 회장이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모일 모처에 회집함을 요하노라”고 하는 선언에서 나타난다.<sup>15)</sup> 그러나 새 총회의 개회선을 말하는 조문에서 전통회(前總會)의 임원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총회는 매년 일회 정례로 예정한 시일 장소에서 회집하되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라고 한다.<sup>16)</sup> 이로 보건대 총회는 폐회되었지만 임원은 분명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또한 제 36 회 총회가 우리 교단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확정한 것은<sup>17)</sup> 총회가 하나의 상설 치리회(常設治理會)로 가정하고 있는 테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교단의 명칭을 총회라는 이름을 붙여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회가 회집되었을 때에, 구총회가 그 교단을 가진적으로 대표할 수는 있어도 그 교단의 명칭이 될 수는 없다. 교단의 명칭에는 어떤 “교회”란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의 명칭은 “한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혹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함이 타당하다.

총회를 상설 치리회로 차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현실적인 환경의 요청에 의함인 줄 안다. 그러나 장로교의 기본 원리를 파수하면서 현실에 적응해 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단을 대표해서 다음 총회까지 해야 하는 임시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위원회를 두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정부 관계의 교단 일을 위해서는 대정부 위원회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교회의 대표로 정부와 접촉하게 하면 된다.

15) 정치 제 67 조

16) Ibid., 66조

1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36 회 총회록 p. 23

대교파관계 (對教派關係)의 일도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할 수 있다. 현재 총회가 상설 치리회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총회 폐회 후에도 총회장이란 호칭이 직명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총회장이 교단장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실상 이것은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다같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 온 것 중의 하나였다. 한국장로교회가 차츰 장로교 정치 원리를 떠나, 감독교회 정치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해주고 있다. 교권욕은 누구에게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교회 역사상 교권만큼 주님의 교회에 해를 입힌 악도 별로 없다. 그러기에 개혁자들과 장로교회 정치의 터를 놓은 신학자들은 교회정치에 있어서 교권배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었다.)

### 맺는말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떠난 교회는 더 이상 장로교회일 수 없다. 그러기에 장로교회와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교회 원리를 따라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 36년 전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의 가치를 들고 출범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장로교 원리를 따라 개혁해 왔는지를 살펴봄이 필요하다. 개혁이 없을 때 변질이 있을 뿐이다. 현상유지란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참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교회이다.)